

제352회 임시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5. 1. 23.(목)

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881
제출일자	2025. 1. 10.
회부일자	2025. 1. 14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(수석전문위원 남정해)

##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김진엽 의원 외 20명

2. 제안이유

- 개인정보의 경제적·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각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 보호 주체와 의무, 처리절차·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나.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- 다.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, 제14조)

라.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및 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 
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, 제16조)

#### 4. 관계법령: 붙임

#### 5. 조례안 예고 결과: 의견 없음

#### 6. 관련부서 협의

가. 법제심사: 검토 완료

나.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다. 부패영향평가: 부패 유발요인 없음

라. 해당부서 의견: 검토 완료(정보통신담당관)

라. 예산 수반사항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#### 7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의

경제적·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각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 보호 주체와 의무, 처리절차·방법 등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주요 내용을 보면,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파일 관리, 이의신청,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관리 및 교육,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보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  - 다만,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“시행규칙”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2조(정의)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음.

### ■ 개인정보 보호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  -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“가명정보”라 한다)

1의2. “가명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3. “정보주체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개인정보파일”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

5. “개인정보처리자”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
6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

나.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○ 안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져야 할 개인정보 수집, 처리 목적, 관리, 공개 등 권리 보장, 정보주체에 사생활 침해 최소화, 개인정보 처리 방법, 목적 외 용도로 활용금지 및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4조(도지사의 책무)는 도지사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, 오용·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·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.

- 안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.
- 안 제6조(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)는 개인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기본계획은 3년마다 직속기관·지역본부·사업소, 출자·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,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) 및 제8조(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)는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관리책임자 지정과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함.

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기획조정실장
2. 개인정보 관리책임자: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

-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,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.

■ 개인정보 보호법

- 제3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종업원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.
-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7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

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,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
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,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, 정보의 교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,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,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**제3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)**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

1. 공공기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

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: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이하 “고위공무원”이라 한다)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
나.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(長)으로 하는 국가기관: 3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)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
다.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,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

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: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
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(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: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
 마. 시·도 및 시·도 교육청: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
 바. 시·군 및 자치구: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
 사.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: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. 다만,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.  
 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: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. 다만,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- 안 제9조(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부터 제12조(협의회의 운영)까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3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.
- 안 제13조(개인정보파일 관리)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파일의 판단사항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요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.

■ 개인정보 보호법

**제7조(개인정보 보호위원회)**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보호위원회는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정부조직법」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
2. 제7조의9제1항의 심의·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

**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**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


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2.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
3.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의 처리방법
5. 개인정보의 보유기간
6.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2.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 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3.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4.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
5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

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,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**제34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)**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.

- 안 제14조(개인정보의 파기)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의 파기 및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5조(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) 및 제16조(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)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.

■ 개인정보 보호법

**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민감정보”라 한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.

**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고유식별정보”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② 삭제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,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·신고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이 조에서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
2.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
3.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,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,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**제30조의2(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)** ④ 공공시스템운영 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
**제39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.

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, 취약점 점검·보완,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·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,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,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
○ **안 제17조(수수료 청구 및 납부) 및 제18조(이의신청)는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운송료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에 조치에 불복하는 사항을 규정함.**

■ **개인정보 보호법**

**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**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,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,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,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·설명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등요구”라 한다)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·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
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.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,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

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.

#### 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**제47조(수수료 등의 금액 등)**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 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. 다만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인지

2.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증지

3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

○ 안 제19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) 및 제20조(보험·공제 등의 가입)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 확산 과정에서 유출이 심화되어 사회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<sup>1)</sup>하고 있으며, 대량의 개인정보를

처리하는 공공부문은 더욱 엄정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나, 형식적 조치 점검 및 낮은 수준의 제재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.

### <공공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현황>

구 분	합 계	국가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	교육기관 (대학, 교육청)
파일 수	<b>290,967개</b>	16,425개	157,394개	117,148개
개인정보 건수	<b>52,083백만건</b>	46,753백만건	4,687백만건	642백만건

[출처: 202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(개인정보보호위원회)]

- 또한, 법적 최소 의무만 이행하려는 전통적 관습·관행에 따라 규정 중심의 현재 개인정보 보호체계로는 사회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- 이에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'22년 6월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'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'을 배포하여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음.
-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해당 조례의 제정은 늦은 편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 및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"시행규칙"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1) 국민의 53.2%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 우려(통계청, 2022년 사회조사 결과)  
민간의 데이터 유출로 기업당 평균 435만 달러 피해(IBM, 2022 데이터 유출 보고서)

## □ 관련근거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
- 경상북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 제24조(처리 실태 조사)

## □ 정비목적

-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보유, 불필요한 파일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, 투명성 확보
-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등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

## □ 정비개요

- 정비기간 : 2024. 9. ~ 10.
- 정비대상 : 본청, 직속기관·지역본부·사업소 전 부서(소방서 포함)
- 정비내용
  - (파일정리) 개인정보보호 종합시스템 내 부서별 개인정보파일 현행화
  - (파일파기) 처리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관 경과 등의 개인정보파일 파기
  - (안전조치) 민간정보, 고유식별정보 분석 및 암호화 등 안전조치 실시
  - (영향평가)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조사

## □ 정비결과

-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

구분	계	본청 (도의회 포함)	직속기관	지역본부	사업소	소방서
파일수 (정보주체수)	1,220 (81,968,754)	74 (80,671,673)	21 (213,230)	6 (5,771)	24 (111,119)	1,095 (966,961)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개인정보 보호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“가명정보”라 한다)

**제7조(개인정보 보호위원회)**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보호위원회는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정부조직법」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

2. 제7조의9제1항의 심의·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

**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민감정보”라 한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.

**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고유식별정보”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

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② 삭제 <2013. 8. 6.>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,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·신고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이 조에서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
2.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
3.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
**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**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,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,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,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·설명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등요구”라 한다)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·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.
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.

## 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**제5조의3(시·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)**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시·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(이하 “시·도 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

있다.

② 시·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시·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
2.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
3.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
4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·도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30조의2(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)**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
**제39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.

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, 취약점 점검·보완,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·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,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,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
**제47조(수수료 등의 금액 등)**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. 다만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

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인지
2.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증지
3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

## 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조례안 제9조(협의회의 운영) 제8항
  -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조례안 제19조(보험·공제 등의 가입)
  -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9조 제8항의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, 제19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손해배상 대비 보험 가입(20백만원) 등으로 비용이 수반되지만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에 해당

## 4. 작성자

- 정보통신담당관 지방전산주사 김은주 (054-880-2962)



# 경 상 북 도



수신 정보통신담당관  
(경유)

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(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)

1. 정보통신담당관-9553(2024.12.3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검토결과

조례명	검토의견
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</li> </ul> <p>조례 시행에 따라 협의회 운영,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으로 일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, 소요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판단되므로,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.</p>

끝.

## 예 산 담 당 관 세

주무관	윤종모	예산총괄팀장	최현숙	예산담당관	전경 2025. 1. 2. 차순애
협조자					
시행	예산담당관-2	(2025. 1. 2.)	접수	정보통신담당관-4	(2025. 1. 2.)
우	36759	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풍천면 도청대로	/ <a href="http://www.gb.go.kr">http://www.gb.go.kr</a>		
전화번호	054-880-2153	팩스번호	054-880-2369	/ lackaf2pro@korea.kr	/ 비공개(5)

"아이도 행복이도 희망이도 미래도"